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제8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시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8조제9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⑩ <신 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단서 신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4. (현행과 같음)